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국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개인의 장기 재산형성 지원 등을 위한 개인투자용국채의 도입을 그 내용으로 하는 「국채법」 개정에 따라 개인투자용 국채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 및 말소와 증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 개인투자용국채 원금의 상환과 이자 지급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국채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대상기관 등 대통령령에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 1)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일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안 제3조제3항)
- 2) 국채증권 기재사항 중 국채의 명칭에 “개인투자용국채”를 추가함
(안 제4조제2항)

나.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에 관한 사항

- 1) 「국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채의 등록을 위한 장부의 종류에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을 위한 장부를 추가함(안 제13조제2항)
- 2)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 청구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다. 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기관에 관한 사항

- 1) 「국채법」 제8조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전자등록기관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
- 2) 국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국채사무처리와 관련된 기관(국채사무 관계기관)에 전자등록기관을 추가함(안 제34조)

라. 개인투자용국채의 질권 설정 및 담보 제공에 관한 사항

- 1) 「국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질권설정 및 질권이 아닌 담보설정 등록청구 대상에서 개인투자용국채를 제외함(안 제17조, 제18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5. 19. ~ 6. 28.)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4항”을 “법 제5조제5항”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국고채권”을 “국고채권 및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개인투자용국채”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법 제4조제1항제1호”를 “법 제4조제1항제1호 가목”으로, ““국고채권”으”를 ““국고채권”으로, 같은 호 나목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의 명칭은 “개인투자용국채””로 한다.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한 국채에 대하여는 국채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제6조 단서 중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하도록 정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하도록 정한 국채증권
2.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발행한 개인투자용국채 증권

제7조제2항 중 “한국은행”을 “한국은행,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처리한다”를 “처리하되, 국채사무처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채사무처리

기관의 지점(분사무소 기타 이에 준하는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법령에서 정한 기관에서 이를 처리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채의 등록을 위한 장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채등록부

가. 갑종 국채등록부(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국채를 등록한다)

나. 을종 국채등록부(기명증권으로 발행한 국채를 등록한다)

2.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이 작성·관리하는 장부

가. 발행인관리계좌부

나. 고객관리계좌부

다.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3.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계좌관리기관이 작성·관리하는 고객계좌부

제1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장부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제4항 중 “국채등록부”를 “제2항의 국채등록부 등 장부”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국채의 응모자 또는 인수인”를 “국채(개인투자용국채는

제외한다)의 응모자 또는 인수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청구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제1항 중 “국채등록부에 등록한 국채”를 “등록국채”로, “국채사무처리기관”을 “해당 등록기관(제13조제2항의 장부 중 청구인의 명의로 등록된 장부를 작성·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6조 중 “국채등록부에 등록한 국채”를 “등록국채”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국채에 대하여는 그 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제1항 중 “등록국채”를 “등록국채(개인투자용국채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등록국채”를 “등록국채(개인투자용국채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국채원금”을 “국채(개인투자용국채는 제외한다) 원금”으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은행”을 “한국은행, 전자등록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전자등록기관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국채발행의 요청) <u>법 제5조 제4항</u> 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채의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조(국채발행의 요청) <u>법 제5조 제5항</u>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제3조(국채의 발행일) ①·② (생략)	제3조(국채의 발행일)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조에 따라 통합하여 발행하거나 재발행하는 <u>국고채권</u> 의 발행일의 결정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 ----- ----- <u>국고채권</u> 및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u>개인투자용국채</u> ----- ---
제4조(국채증권의 기재사항) ① (생략)	제4조(국채증권의 기재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국채의 명칭을 기재하는 경우 <u>법 제4조제1항제1호</u> 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의 명칭은 “ <u>국고채권</u> ”으로 한다.	② ----- ----- <u>법 제4조제1항제1호</u> <u>가목</u> ----- --- “ <u>국고채권</u> ”으로, 같은 호나목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의 명칭은 “ <u>개인투자용국채</u> ”---

제5조(등록국채에 대한 기명증권의 발행 등) ① 채권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국채(이하 “등록국채”라 한다)에 대하여 기명으로 국채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생략)

제6조(기명식·무기명식국채의 전환) 국채증권의 소유자는 기명국채증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국채증권을 기명식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하도록 정한 국채증권을 제외한다.

<신 설>

제7조(국채증권의 교환청구) ①
(생략)

②제1항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제5조(등록국채에 대한 기명증권
의 발행 등) ① -----

.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한 국채에 대하여는 국채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기명식·무기명식국채의
전환) -----

다음 각 호의

1.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 하도록 정한 국채증권

2.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발행한 개인투자용국채 증권

제7조(국채증권의 교환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오염 또는 훼손된 국채증권을
첨부하여 이를 한국은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하 “국
채사무처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국채등록사무) ① 국채의
등록사무는 국채사무처리기관
의 본점(주된 사무소 기타 이에
준하는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에서 처리한다. 다만,
국채사무처리기관의 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일부를 국채사무처리기
관의 지점(분사무소 기타 이에
준하는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채등록부는 갑·을 2종으
로 하며, 갑종국채등록부에는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국채를
등록하고, 을종국채등록부에는

----- 한국은행, 전자
등록기관 -----

-----.

제13조(국채등록사무) ① -----

----- 처리하되, 국채사
무처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채사무처리
기관의 지점(분사무소 기타 이
에 준하는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법령
에서 정한 기관에서 이를 처리
한다.

② 국채의 등록을 위한 장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채등록부

가. 갑종 국채등록부(증권을

기명증권으로 발행한 국채를 등록한다.

③국채등록부는 국채사무처리기관의 본점에 두고, 그 부분은 국채사무처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지점에 둔다. <단서 신설>

④국채등록부는 국채의 명칭·

발행하지 아니한 국채를 등록한다)

나. 을종 국채등록부(기명증권으로 발행한 국채를 등록한다)

2.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이 작성·관리하는 장부
가. 발행인관리계좌부
나. 고객관리계좌부
다.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3.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계좌관리기관이 작성·관리하는 고객계좌부

③-----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장부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2항의 국채등록부 등 장부

발행회차 또는 기호별로 계좌를
분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국채의 등록청구) ① 국채의 응모자 또는 인수인은 국채의 등록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모집결정후 또는 인수할 때에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생략)

제15조(등록국채의 등록변경 청구) ① 국채등록부에 등록한 국채에 대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6조(국채등록의 말소청구) 국채등록부에 등록한 국채에 대하여 그 등록을 말소하고 국채증

제14조(국채의 등록청구) ① 국채
 (개인투자용국채는 제외한다)의
응모자

 -----. 다만, 개인투자용국
채의 등록청구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등록국채의 등록변경 청구)
 구) ① 등록국채-----

 ----- 해당 등록기
관(제13조제2항의 장부 중 청구
인의 명의로 등록된 장부를 작
성·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국채등록의 말소청구) 등
록국채-----

권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하여
야 한다. <단서 신설>

제17조(등록국채의 질권설정) ① 등록국채에 대하여 질권설정 또는 전질의 등록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서에 당사자 쌍방이 기명날인하고, 이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8조(질권이 아닌 담보의 등록
청구) ①법령에 의하여 등록국
채를 질권이 아닌 담보의 목적
으로 하여 그 등록을 청구하고
자 하는 자는 청구서에 기명날
인하고, 이를 국채사무처리기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3조(원금의 상환기일) ① (생략)

----- . 다만, 「주식·사채 등
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국채에 대하여
는 그 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등록국채의 질권설정) ①
등록국채(개인투자용국채는 제
외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질권이 아닌 담보의 등록
청구) ①----- 등록국채
(개인투자용국채는 제외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원금의 상환기일) ① (현
행과 같음)

②상환기간 만료전에 <u>국채원금</u>의 일부를 추첨에 의하여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 상환액·상환기일·추첨일·추첨방법등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 (생략) 제34조(자료 제출의 요청) 법 제17조제1항에서 “<u>한국은행</u>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 등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생략) <u><신설></u> 2. ~ 7. (생략)	②----- <u>국채(개인투자용국채는 제외한다) 원금</u>----- ----- ----- ----- -----.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자료 제출의 요청) ----- ----- “<u>한국은행, 전자등록기관</u> ----- ----- ----- ----- ----- -----. 1. (현행과 같음) 1의2. 「<u>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u>」 제5조에 따라 <u>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전자등록기관</u> 2. ~ 7.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국채과	
연 락 처	(044) 215 - 5134